

소년범죄 보도의 문제점

오택섭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행 형법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법규정과 언론의 보도활동이 유리되어 있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는 숨겨온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수사권·남용을 지지하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수없이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의 사건 보도에 관하여는 언론자유를 철칙으로 신봉하는 국가에서도 법에 의한 규제든, 자율적인 규제든 보도에 관하여 금지내지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이나 자율식 윤리강령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가 하면 엄연히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단체나 기관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I. 서

현행 형법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법규정과 언론의 보도활동이 유리되어 있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매체는 숨겨 온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저지하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수없이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의 사건보도에 관하여는 언론자유를 철칙으로 신봉하는 국가에서도 법에 의한 규제든 자율적인 규제든 보도에 관하여 금지 내지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이나 자율적 윤리강령 등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가 하면 엄연히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단체나 기관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신중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서의 잘못을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재활(rehabilitation)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구체적인 청소년 사건보도의 문제에 앞서 소년범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II. 소년 범죄 현황

법률상 소년비행은 아래와 같이 크게 5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1)

A. 범죄소년

14 세 이상 20 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

B. 촉법소년

12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 없음)

C. 우범소년

12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소년법 제 4 조)

D. 불량행위소년

20 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깃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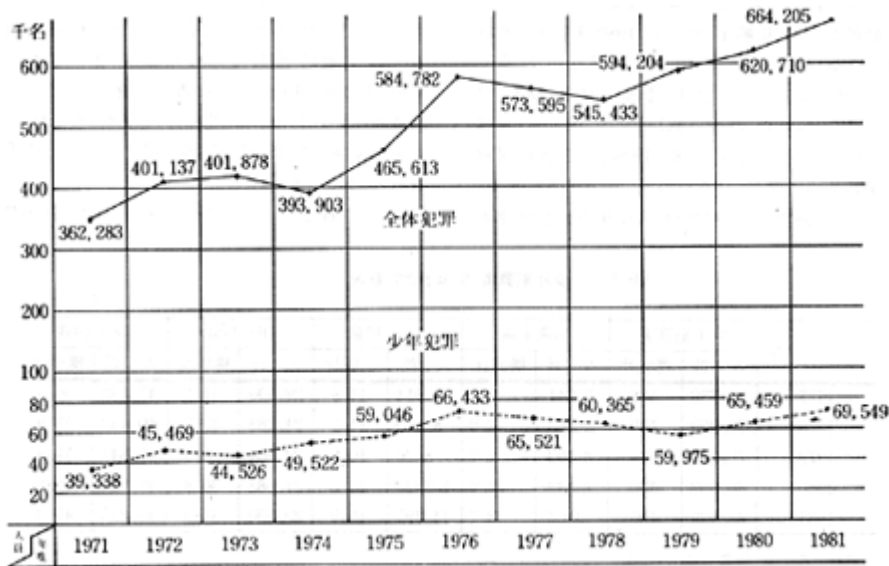
E. 요보호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이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 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사건이란 곧 14 세 이상 20 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관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범죄사건의 개황은 어떠한가? 치안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으나 1977 년부터는 약간씩 감소하다가 1979 년을 고비로 하여 1980 년부터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수에 대한 비율을 보면 작년의 경우 전체 664,205 명 중 청소년 범죄는 69,549 명으로 10.5%에 달하고 있다.

(표 1) 년도 훈 전체범죄와 소년범죄



자료: 청소년 백서 1982. P.356

(표 2) 소년범죄의 유형별 동향

區 分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計	49,522	59,046	66,433	65,521	60,365	59,975	65,459	69,549
殺人	63	85	39	68	55	67	75	64
強 盜	864	1,055	987	834	741	870	1,695	1,779
強 姦	724	858	952	1,204	1,129	1,291	1,580	2,220
放 火	38	52	42	34	40	37	22	44
暴 行	18,599	26,830	27,340	30,819	27,773	29,794	30,890	29,048
窃 盜	21,767	21,120	26,477	22,228	18,631	15,570	20,614	25,700
傷 害	786	917	899	1,066	960	856	892	859
恐 喝	195	213	252	255	227	203	248	262
脅 迫	20	28	29	19	12	22	13	30
横 領	351	488	459	385	403	291	245	302
賭 博	144	193	291	264	184	144	128	142
贓 物	895	774	797	564	470	356	431	571
詐 欺	483	553	430	380	338	351	360	369
其 他	4,593	5,880	7,439	7,461	9,402	10,123	8,266	8,159

자료 : 청소년 백서, 1982, P 357

이러한 소년범죄의 유형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에 나타난 대로 1980 년에 비해 1981 년에 늘어난 유형으로는 강도, 강간, 방화, 절도, 공갈, 협박, 횡령 등이었다.

한편, 1979 년에 일시 둔화현상을 보이던 소년범죄자의 저 연령화 현상은 1980 년부터 변화하여 1981 년에 이르러서는 그 추세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 년에는 15 세 이하가 17.0%이던 것이 1981 년에는 19.7% 로서 2.7%가 증가한 반면, 18~19 세는 52.2%에서 47.0%로 5.2%가 감소하였다. ((표 3) 참조)

이상의 개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범죄사건은 절대량에 있어서의 증가는 물론 그 질에 있어서 강력화, 조폭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도는 문제의 중대성을 사회 전체에 알림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케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으나 언론의 시각이 그릇되었을 경우 극히 일부의 청소년 비행을 전체 청소년층의 잘못된 양 오인케 하거나, 한번 저지른 잘못이 세상에 공표됨으로써 그 청소년의 장래를 그르치게 할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 또는 자율단체에 의한 보도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표 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

年 度	少年犯罪者		14歳未満		14~15歳		16~17歳		18~19歳	
	人 員	構成比	人 員	構成比	人 員	成 比	人 員	構成比	人 員	構成比
1977	83,730	100	2,641	3.2	9,914	11.8	28,536	34.1	42,639	50.9
1978	75,300	100	2,163	2.9	8,415	11.2	24,283	32.2	40,439	53.9
1979	79,240	100	2,103	2.7	8,261	10.6	22,864	28.9	45,847	57.8
1980	86,962	100	2,643	3.0	12,322	14.0	27,083	30.8	45,914	52.2
1981	88,936	100	3,398	3.7	14,197	16.0	29,590	33.3	41,855	47.0

자료 : 청소년 백서 1982 P359

III. 규제현황

실정법상 규제 조항은 소년법 제 61 조에 나타나 있다.2)

소년법 제 61 조(보도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사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율단체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대동소이한 조항을 두고 신문, 방송, 잡지, 광고 등에서 청소년 일반 특히 사건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신문편집인 협회 3)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 4 항.

「미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육한 부녀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방송심의위원회 4)

방송심의규정 제 2 장 보도방송

15 항; 비록 사실보도라 하더라도 잔인하거나 비참한 표현은 피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패륜적인 범죄의 보도는 신중을 기한다.

17 항; 다음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욕을 당한 부녀자가 그 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는 정도의 성명, 주소, 사진 등

나. 범죄 등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직접 관계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

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친족 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

라. 단순히 사건의 혐의에 불과한 용의자의 인적 사항

이러한 규정은 일면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으나 그 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등을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년의 명예와 비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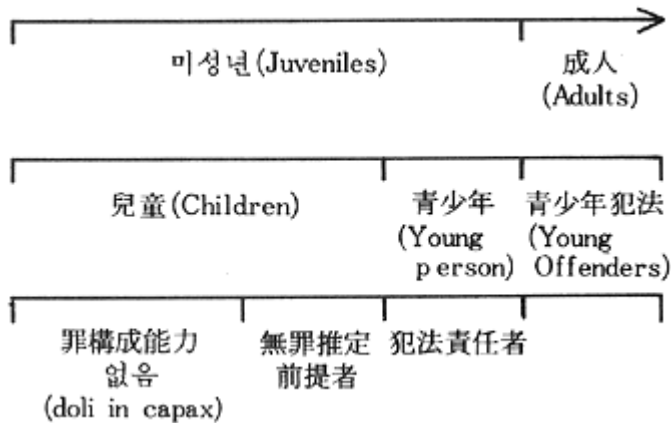
IV. 외국의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정이나 자율적인 제한조치는 실제로 외국 특히 일본의 것을 복사해 놓은 감이 없지 않다. 즉 외국에서처럼 청소년 사건보도에 관하여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없었고 이를 해소키 위한 기준으로서 규정이 설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조항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신문이나 방송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외국의 규제현황과 언론의 대응 등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자.

1. 영국의 경우 5)

영국에서는 범법자의 나이와 범법의 구성여부 내지는 법정의 종류 등이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우선 도표를 통해 영국의 연령에 따른 명칭과 법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범법자는 만 17 세가 되면 법적 형사책임을 갖게 된다. 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만 10 세까지의 아동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소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이 연령의 한계를 14 세까지 올리자는 의견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14 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범죄를 구성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이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소될 수가 있다. 즉 기소된 아동이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저지른 일이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을 때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자의 범죄행위의 경우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동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14~17 세의 청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중죄나 성인과 같이 기소된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7 세가 넘으면 일반법정에서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한편 청소년 법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나 증인(17 세 이하)의 성명, 주소, 학교 또는 본인으로 추지케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위반했을 때에는 벌금형 (500pound : 62 만 5 천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 미국의 경우 6)

미국의 예를 보면 각 주마다 청소년범죄사건보도에 관한 규정이 다르고 언론자유를 신성시하는 풍조가 지배하고 있어서 청소년 범죄자의 보호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청소년 범죄자의 재활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매스 미디어에 의한 청소년범죄자의 신원공개가 청소년들의 재활을 지연 내지 방해해 왔다고 언론을 비난하고 있으나 이에 맞서 언론기관 측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법원의 주장은 곧 언론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 버리는 예가 많다. 실례를 들자면 1979 년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법정은 언론이 법정으로부터의 문서화된 명령 없이 심리 중에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였으나 랜드마크(Landmark)사에서 이를 어기고 기소된 청소년의 신원을 게재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법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랜드마크 사의 승리를 선언하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 단순히 법정의 명령여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법정의 경우 기자들의 방청을 허가제로 법규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기자들의 법정출입을 금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부모 및 관련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수락하는 경우에만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3. 일본의 경우 7)

일본의 소년법 제 61 조(기사 등의 게재금지)에서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붙여진 소년 또는 소년 때 범한 죄로 부터 공소가 제기되었던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얼굴 등에 의해 그 자가 당해사건의 본인이었음을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년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가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한편 신문협회의 소년법 제 61 조에 대한 취급방침을 보면

「소년법 제 61 조는 미성숙한 소년을 보호하며, 그 장래의 갱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은 소년들의 부모 입장에 서서 법의 정신을 실천해야만 한다. 벌칙이 가해지지 않은 것은 신문의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취지에 의한 것으로 신문은 더욱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만 한다. 즉 20 세 미만인 비행소년의 성명, 사진 등을 지면에 게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1. 도망 중으로 방화, 살인 등 흉악한 누범임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2. 지명수배 중에 있는 범인수사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 보호보다는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우선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성명, 사진의 게재를 인정하는 예외를 두기 위해 당국에 요망하고 그것을 신문계의 관행으로써 확립하고 싶다. 」

일본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명백하게 보도금지조항이 있고 신문협회에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보도를 보면 사건에 따라 실명을 공표하는 신문과 익명을 고집하는 신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신문에서 실명을 쓸 경우 해설란을 통하여 실명공표의 이유 또는 자사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V. 국내보도 및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심의단체로는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심위를 들 수 있는데, 신문의 경우 8) 81 년도 미성년자 보호취지 위반이 9 건, 미성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개가 30 건 등 모두 39 건이 있었다. 방송의 경우 9)에는 불명예 사건과 관련 없는 특정 교육기관명의

공개가 15 건, 미성년 피의자의 인적 사항공개가 5 건이 있었다. 또한 미성년인 청소년이나 선의의 제 3 자(학교 또는 피의자 가족)의 인적사항을 부당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정교육기관의 명예 및 청소년 보호 취지를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반권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공식적 규제에 나타난 자료 외에 실제 신문보도경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일부 청소년의 비행을 전체의 것인 양 오인케 할 여지가 있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의 내용을 알린다는 선을 넘어서 황색지(Yellow journalism)화 내지는 센세이셔널 저널리즘의 일면으로 보아질 수 있겠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78년 3월 23일자 S 일보 『강의는 허공에 폭력난무-동료도 치고 선생도 치고 살인도-』 제하의 기사를 비롯하여 '80년 2월 1일자 D 일보 『유흥가의 무법자 무서운 10 대』 '80년 1월 23일자 C 일보 『겁 없는 「하이틴 범죄」』 '81년 4월 14일자 D 일보 『위험한 고교생- 조그만 충격에도 과격한 행동-』 '82년 3월 24자 H 일보 『사소한 일로 칼부림 일쑤』 등 상당수의 실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청소년 보호 취지의 규정은 사실(facts)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언론이 그들을 올바르게 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제목에는 상당한 신중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공개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판단에는 시비가 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특히 청소년 교육기관인 중 · 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실례를 보면, '80년 4월 19일자 D 일보 『○○상고 야간부 2학년생이 술이 취해 학교기물파괴 · 난동』 '80년 4월 24일자 H 일보 『○○고교 야간부 학생이 두발 문제로 난동 기물파괴』 '80년 7월 29일자 H 일보 『○○국교 -고교생. 살인사건 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국교 동창임을 밝힘, '80년 12월 6일자 J 일보 『○○고교 아이스하키 패배 후 길가에서 상점 간판, 공중전화 유리창 파괴 · 난동』 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들 기관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경우로서 그 학교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그 학교관계자 즉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다.

셋째, 청소년 피의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원을 공개한 사례이다. 신문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다. '82년 1월 1일 이후 '82년 8월 15일까지 기사내용 공개경고 2건, 비공개경고 61건, 주의 1 건이었으며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지적은 개별권고 1건, 일반권고 1건, 주의 9건 등이었다.¹⁰⁾

VI. 문제점 및 대책

이상의 규제 현황과 보도 사례를 살펴보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한다.

첫째, 보도의 유형별 사례 전체에서 기사 될 수 있는 것이 기자의 양식문제이다.

소년법 또는 윤리강령의 조항유무를 떠나서 사회적인 공기인 언론과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기자들의 상식 내지는 양식의 문제이다. 미성년피의자 신원공개로 가장 관심을 끈 바 있는 이윤상 군 유괴살해사건 당시 공범으로 발표된 이○○양, 고○○양의 성명, 교명, 주소 등을 당시 D일보(11월 30일자), J일보(11월 30일자)가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었다. 또한 서울 인현동 화장품상 이 여인 피살사건('81년 8월 13일)은 당초 검찰수사 과정에서 많은 억측이 그대로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딸 ○○양(S여중 2년)의 이름과 나이를 공표해 버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마땅히 숨겨주어야 할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는 작태에 대하여 신동호 씨(조선일보 논설주간)¹¹⁾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데 지나치게 5W/H 원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그만 사실에까지 5W/H를 모두 포함시켜야 만족하는 버릇이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그는 세기적 허위보도 사건으로 유명했던 「지미의 세계」를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 제니·쿠크 기자가 이 같은 익명의 기사를 썼다면 데스크에서 믿지 않았을 것이며 기사화도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기자의 양식문제는 미성년자 사건보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풍토의 개선과 아울러 언론인 재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둘째, 기자의 양식문제와 아울러 데스크의 시각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신동호 씨의 해석처럼 기자에게 불필요한 취재내용의 기사화를 요구하는 문제와 아울러 본문 기사 내용에는 「지극히 일부 청소년의 비행임」이 강조되었음에도 몇몇 사건의 취합 배열과정에서 「날로 조포화해가는 청소년……」 운운이라든가 「무서워진 등 하교길」 운운으로 제목을 붙이는 사례는 일부 비행을 전체의 것인 양 오인케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읽는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불성실, 나아가 사회 전체의 청소년 시각을 오염케 할 우려가 있다. 이는 나쁜 것도 좋은 것처럼 포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밝은 면을 보다 강조하고, 채찍질 밑에는 항상 따뜻한 정과 격려가 배합되어야 교육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실제 규정과 시행상의 문제로서 「본인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성명, 주소, 용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오용하여 얼굴 사진을 심되 눈 부분만 까맣게 칠한 사진을 심는다는가, 불필요한 「이 사진은 본문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이라는 설명을 단 사진을 게재하는 문제이다.

신문에서 사진은 실재를 보여 준다는 커다란 의미 외에도 편집(make-up)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치게 「역시 사진이 한 장쯤 들어 가야」라는 생각에 얽매인듯하다. 「사람의 눈부위를 까맣게 칠해 버린다」라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주소 공개의 정도 문제이다. 어디까지 밝히는 것이 주소 공개이며, 또 어느 정도 공개해도 좋은 지에 대한 일반론이 없는 듯하다.

실례를 보면 각 사건마다 각 신문마다 상이하다. 주소 공개의 정도 문제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동까지를 밝히는 것과 시골에서 면까지 밝히는 것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시골에서는 지리적 편협성, 폭 넓은 이웃 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울 ○○구 ○○동 친척집에 놀러 왔던 ○○도 ○○군 ○○면 박모양이 추행을 당했다」는

기사가 날 경우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동에서는 무심히 지나치고 말 일이나 시골에서는 추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청소년 피해자의 신원공개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듯하나 피해자인 청소년 본인에게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심리중인 청소년 사건의 관계자(그가 미성년인 경우)는 모두 보호한다는 예를 보더라도 피해자 청소년도 보호대상 범위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할 줄 믿는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사건과 무관 또는 유관한 선의의 개인이나 단체의 보호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81 년 초에 발족한 언론중재위에 미성년자 신원공개와 관련된 문제가 한 번도 제소된 적이 없다는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이 아직도 그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적 제한 조치에 의존 한다기 보다는 언론 스스로가 청소년 재할, 육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사 한 건 한 건마다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

- 1) 청소년백서, 1982, p. 355.
- 2)'82 한국신문방송연감. 한국언론연구원, p. 482.
- 3) 상계서, p.46.
- 4) 상계서, p.49.
- 5) Robin Callender Smith, Press Law, London, Sweet & Maxwell, 1978, PP. 202~210.
- 6) Marc A. Franklin, Robert Trag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81, PP. 456~458.
- 7) 일본신문협회 편, 취재와 보도, 신문편집의 기준, 동경, 1980, PP. 29~54.
- 8) 한국언론연구원. 전계서, P. 87,
- 9) 한국언론연구원, 전계서, p. 288.
- 10)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과 방송, 1982 년 2 월 호~ 9 월 호 참조.
- 1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2, 가을, PP, 26~33.

- 서울대학교 문리대 외교학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 신문학 석·박사.
- 저술 : 「Formative Evaluation of self - incorporated Programs」 외 다수
- 현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